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KS M 6080 2종 수용성 흰색 도료(P4-R5/RW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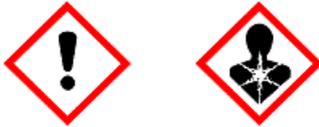
- 용도 : 노면표지용
- 사용상의 제한 : 추천 용도외 사용제한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대화페인트 공업(주)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90번지
- 담당부서 : 기술연구소
- 전화번호 : 031-491-2041~5
- 긴급 전화번호 : 031-491-2041~5
- FAX 번호 : 031-491-0675
- 이메일 주소 : dhp@dhpaint.com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구분4
- 발암성: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2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시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경고

○ 유해·위험 문구

- H302 삼키면 유해함
-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H371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11항 참조(MSDS)).

○ 예방조치문구
1) 예방

-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0 (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2) 대응

-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8+P311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P330 입을 씻어내시오.

3) 저장

-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4) 폐기

- P501 폐기물관리법의 해당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NFPA 등급 (0 ~ 4 단계)

- 보건 : 1, 화재 : 0, 반응성 :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석회암; 석회석	탄산 칼슘	1317-65-3 / KE-21996	45 - 55
물	다이하이드로젠 옥사이드	7732-18-5 / KE-35400	10 - 20
아크릴산 뷰틸-메틸 메타크릴산-메타크릴 산 중합체 (BUTYL ACRYLATE-METHYL METHACRYLA...	해당없음	25035-69-2 / KE-25192	10 - 20
이산화 티타늄	산화 티타늄	13463-67-7 / KE-33900	5 - 15
메탄올; 메틸 알코올	목정; 메틸 알코올	67-56-1 / KE-23193	0.1 - 5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 모노아이스부티레이트	25265-77-4 / KE-24891	1 - 5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척하십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십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십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소화제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물(적상), 내알콜포 소화약제대화제 : 물(적상, 무상), 내알콜포 소화약제
-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십시오.
- 화재 진압 시 방화복, 소방용 구조헬멧, 소방용 안전화, 소방용 안전장갑,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 어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
-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시오.
-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 참조)를 착용하여,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
-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
-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
-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 전문가의 감독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
-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에 신고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다량누출: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처리하시오.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용매를 닦아내시오.
-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증기, 액체, 고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시오.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시오.
-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
-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
-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하시오.
- 취급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노출기준**
 - [석회암 ; 석회석] : TWA : 10 mg/m³ - 탄산칼슘
 - [이산화 티타늄] : TWA : 10 mg/m³ - 이산화티타늄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TWA : 200 ppm, STEL : 250 ppm - 메탄올
- **ACGIH노출기준**
 - [이산화 티타늄] : TWA 10 mg/m³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TWA, 200 ppm (262 mg/m³) STEL, 250 ppm (328 mg/m³) Skin
- **생물학적 노출기준**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소변 중 : Methanol 15 mg/L(작업후)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흙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 화합물용)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눈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성상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 색	흰색
나. 냄새	순환자극성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0 °C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 (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58-1.62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80-90KU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
-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자료없음
- (경구)
 - 삼키면 유해함
- (눈·피부)
 -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 경구 독성 - ATE MIX : 300mg/kg < ATEmix <= 2000mg/kg

- [물] : LD50 > 90000 mg/kg Rat (KOSHA)
- [이산화 티타늄] : LD50 > 10000 mg/kg Rat (HSDB)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LD50 = 50 ~ 300 mg/L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LD50 > 3200 mg/kg Rat (SIDS)

* 경피 독성 - ATE MIX : 2000mg/kg < ATEmix <= 5000mg/kg

- [이산화 티타늄] : LD50 > 10000 mg/kg Rabbit (IUCLID)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LD50 = 200 ~ 1000 mg/L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LD50 = 15200mg/kg (16 mL/kg) rabbit (SIDS)

* 흡입 독성 - ATE MIX : 20.0mg/L < ATEmix <= 50.0mg/L

- [이산화 티타늄] : LC50 > 3.43 mg/l Rat (OECD TG 403)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LC50 = 2 ~ 10 mg/L/4hr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LC50 > 4.4375 mg/l Rat (SIDS)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이산화 티타늄] :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 (NITE(2006))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Not irritating : 48시간 관찰시 평균점수 : 0.3 Not irritating : 흉반 점수가 24hr일 경우 0.7, 48hr일 경우 0.3 (IUCLID, SIDS)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이산화 티타늄] :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NITE(2006))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중간 자극성(토끼, Draize test, 자극성)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Slight irritation : 48시간 이후에 자극이 모두 사라짐 (SIDS)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이산화 티타늄] : 사람에서 패치 테스트 결과 음성 (NITE(2006))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과민성 없음 (SIDS)

○ 발암성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 자료없음

* IARC

- [이산화 티타늄] : Group 2B

- * OSHA
 - 자료없음
- * ACGIH
 - [이산화 티타늄]: A4
- * NTP
 - 자료없음
- * EU CLP
 -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이산화 티타늄]: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OECD TG 471, 포유류세포 유전자돌연변이시험 OECD TG 476, 염색체이상시험 OECD TG 473 결과 대사활성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생체 내 염색체이상시험, 소색시험결과 음성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복귀돌연변이시험 :음성 TA98, 100, 1535, 1537, 1538, 0.01 - 3 ug/plate (SIDS)
- 생식독성
 - [이산화 티타늄]: 랫트를 이용한 생식발달독성시험결과, 임상증상, 몸무게변화 등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NOAEL= 1000 mg/kg bw/day, OECD TG 210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NOEL=1000 mg/kg, NOEL = 1000 mg/kg(developmental toxicity) (SIDS)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이산화 티타늄]: 랫트를 이용한 급성성상독성시험결과, 사망없고 흡수율 변화와 투과성 증가에 대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OECD TG 475
 - [메탄올; 메틸 알코올]: 인간의 저농도 메탄올의 장기 노출의 눈에 띄는 증상은 광범위한 눈에 대한 장애가 나타나고 메탄올 노출에 의한 만성 독성 영향으로 실명이 나타난다는 결과도출, 또한 메탄올 증기에 반복 노출해서 만성 독성 증례 두통, 현기증, 불면증, 위장 장애가 나타남, H370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이산화 티타늄]: 랫트를 이용한 경구반복독성시험결과, 사망없고 별다른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NOAEL= 24,000 mg/kg bw/day OECD TG 407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Rat 41~51일 경구 사망동물없음 침과다홀림이 보이거나 시험물질의 맛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사료섭취량, 체중감소. 신장상대무게증가 및 hyaline droplet 가 현미경적 소견으로 보임 간 중심정맥 주변의 간세포의 비대, NOAEL=1,000mg/Kg (SIDS)
-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 발암성
 - [이산화 티타늄]: 발암성 2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 * 생식독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어류
 - [이산화 티타늄]: LL50 >100 mg/l 96 hr *Oryzias latipes*(OECD TG 203)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LC50 30 mg/l 96 hr *Pimephales promelas* (IUCLID)
- 갑각류
 - [이산화 티타늄]: EC50 >100 mg/l 48 hr *Daphnia magna*(48h-EL50 *Daphnia magna* >100 mg/L, 48h-EC50 >100, 48h-EC10=91.2 mg/L, OECD TG 202)
- 조류
 - [이산화 티타늄]: ErL50 >100 mg/l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72h-ErL50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100 mg/L growth rate, static, 72h-EyL50 >100 mg/L static, OECD TG 201)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EC50 18.4 mg/l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IUCLID)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물]: log Kow = -1.38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 log Kow = 3.47
-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물 농축성

- 자료없음
- 생분해성
 - [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 텍산올] : 70 (%) 34 day (SIDS)

라.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마. 오존층 유해성

- 해당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
-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 소각 처리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IMDG CODE/IATA DGR)

- 199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IMDG CODE/IATA DGR)

-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 자료없음
-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석회암 ; 석회석)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이산화 티타늄)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석회암 ; 석회석)
 - 해당됨 (이산화 티타늄)

- 해당됨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이산화 티타늄 이산화 티타늄)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메틸알콜)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석회암 ; 석회석)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제품: 자료없음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 확정분류 결과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H225, H331, H311, H301, H370
- 미국 관리 정보
 -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2267.995 kg 5000 lb
 -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메탄올 ; 메틸 알코올]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자료의 출처**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본 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자

- 2017-03-3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5 회, 2017-12-26

라. 기타

-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 환경, 안전을 보호하고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